



공증인가
법무법인

비 전

[별지 제33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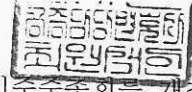
(전화) 02-6743-7001

등부 2025년 제 9403 호

인 증 서

정기주주총회 의사록

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



위 회사는 서기 2025. 03. 27. 9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

주주의 총수 : 9명 발행주식의 총수 : 500,000주
(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사주 32,640주 포함)

출석 주주수 : 2명 출석 주주 보유주식수 : 368,686주

의장인 이승준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출석한 주주의 보유주식총수가 상법 제368조 1항의 정족수를 충족시키므로 이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감사보고, 영업보고를 마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의장은 상법 제447조 및 449조에 의거 제9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승인을 구한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의장은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한 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.

임원보수한도액 : 연간 1,000,000,000원

제3호 의안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 승인의 건

의장은 상법 제 388조 및 정관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한 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.

- 다 음 -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48조에 의거 회사 임원의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① 이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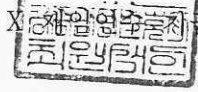
제3조(주관부서)

임원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팀으로 한다.

제4조(퇴직급여의 산정)

①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은

[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(기본급+상여금) X 1/10 X 재임연수 X 지급률]로 한다



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지급률
대표 이사	2 배
전무 이사	2 배
상무 이사	2 배

제5조(재임연수의 계산)

-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.
-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.

제6조(연임임원에 대한 계산)

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당시 연평균보수(기본급+상여금)의 10%를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퇴임월의 급여)

퇴임 당일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며, 본 규정 시행일 현재 근속하는 임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.

제4호 의안 임원(비상근감사) 중임의 건

의장은 본회사의 감사 유석장이 2025년 3월 27일 임기만료이기에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여 줄 것을 구한 바, 참석한 이사들은 신중히 모의한 경과 전원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의 감사 재선임을 승낙한다.

감사 : 유석장 (750516-●●●●●●)

의장은 이상으로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(회의종료시간 같은날 11:30)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.

2025년 3월 27일

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



의장 대표이사 이 승 준
기타비상무이사 이 상 은



공증인가
법무법인 비 전

[별지 제37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(전화) 02-6743-70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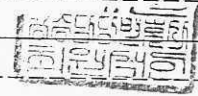
등부 2025 년 제 9403호

인 증

위 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-----의

2025년 03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-----

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이승준 의 대리인 겸 주주 이상은 은-----


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,-----

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-----
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 하였다.-----
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-----에 의하여

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

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-----

2025년 03월 27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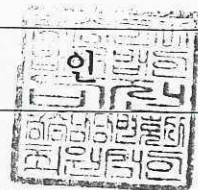
공증인가
법무법인 비 전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공증담당변호사

최영민



아 래

1. 공증촉탁서, 2. 진술서, 3. 확인서, 4. 주주명부, 5. 위임장,-----

6. 인감증명서, 7.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8. 정관-----